

국가공무원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처리사항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휴직처리 하였으나, 휴직기간이 끝난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무단결근 중에 있는 공무원이 있어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1. 당사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휴직기간	최종 복귀 신고 기한
북대구우체국 우편물류과	우정서기 (집배)	구자광	2017.2.10. ~ 2017.5.9. (3개월)	2017.6.9.(금)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 의거 휴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인 2017.6.9.(금)까지는 반드시 복귀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복귀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리됨

2017년 5월 10일

북대구우체국장